별첨 : 의견 검토결과

의 견 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별표4] 100kg 이상의 감량화시설 검사규정에 의한 검사방법(폐기물관리법규정)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1 검토결과

현행 단체표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2호 다목 3) 에 따라 건조식, 발효건조식, 발효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별표3에서 정하는 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로 100kg 미만의 건조식과 200kg 미만의 발효식, 발효건조식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에 '[별표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검사 방법'에 해당되는 사항을 단체표준 "2. 인용표준"에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적합지 않은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해 주시면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같은규정 4호, 단서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 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배출되는 고형물의 양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참고〉 발효식은 미생물을 생육시켜서 발효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생물의 생육을 위해서는 수분, 온도조건 등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의 견 4

발효소멸방식(부숙방식) 검사기준 및 규정 신규 개정 요구

의견4 검토결과

'소멸화'라는 용어는 2016. 05. 25부터 2020. 11. 27 개정되기 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다목 3)의 4)에 존재하던 발효소멸방식이므로 단체표준에 발효소멸방식을 별도로 추가 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1일 재활용 능력이 100킬로그램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필요하다면 부숙방식에 대한 관련 법령적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 견 6

8.10.3(표시소비전력량 측정시간)
및 8.10.4(표시소비전력량 산출) : 변경요망

의견6 검토결과

8.10.3(측정시간) : 처리기를 처리기 작동 표준방식에 따라 처리를 시작한 후(사전 워밍업 가동이 필요 한 경우 워밍업 이후) 1시간 동안 소비전력량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기 가동 소비전력량이 전체가동 평균 소비전력량보다 다소 클 것으로 예상 되지만, 이것은 다른 제품에서도 마찬가지 이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을 감안한 처사 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면, 처리기 가동 전체시간의 표시소비전력량을 시험한다면 시험수수료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8.10.4(표시소비전력량 산출) : 상기 8.10.3(측정시간) 참조

□□□